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3호(2021.11.22)에 의거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3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3차) 승인

1. 지구계획변경 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1) 명 칭 :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 3) 면 적 : 2,035,521.7㎡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 1) 명 칭 : 경기주택도시공사
-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 3) 대표자 성명 (기정) : 안 태 준
(변경) : 김 세 용

다.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 (기정) 1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18년 06월 30일
2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19년 12월 31일
3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21년 12월 31일
4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23년 12월 31일
- (변경) 1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18년 06월 30일
2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19년 12월 31일
3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21년 12월 31일
4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중. 24개월)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통·공공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단위 : 천m²)

구분	계	연도별 조성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보상	2,035	2	1,296	553	82	100	2	-	-	-	-	-	-	-
조성공사	2,035	23	5	27	114	347	641	573	73	13	80	80	30	29

(변경)

(단위 : 천m²)

구분	계	연도별 조성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용지보상	2,035	2	1,296	553	82	100	2	-	-	-	-	-	-	-	-	-
조성공사	2,035	23	5	27	114	347	641	573	73	13	80	80	30	-	-	29

8.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기정)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도별 조성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4,488	669	9,326	4,373	1,476	2,087	1,624	1,044	1,258	860	620	383	642	126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도별 조성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24,488	669	9,326	4,373	1,476	2,087	1,624	1,044	1,258	860	620	383	642	42	42	42

주) 사업비는 용지비, 조성비 합계임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경기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9.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통신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신도시과(전화 : 031-590-8468)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왕숙사업단 다산사업부(전화 : 031-566-6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